- * 반드시 시험시작전까지 공단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- * 코로나19 관련으로 응시하는 분 이외 동행자는 시험시설 전체에 입장하실 수 없으니 협조바랍니다.

응시자격명	초경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1종			
시험장소/시간	모항(나주)	2018.01.30 08:00 (시간)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반드시 도착요망 실기시험장: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487 나주 훈련장		
응시번호/과목	실기* 20180104-P0300 실비행/작업형			
성명	한글	전창준	생년월일 (여권번호)	1995.06.10
	영문	Jeon Changjun		

2018년 01월 04일

한국교통안전공단



〈실기 환불안내〉 단, 임시시험은 환불불가

- 환불가능시간: 시험일자기준 6일전날 (2018.01.22 23:59까지)
- 환불신청방법 : 홈페이지 [신청조회]-[항공자격]-[예약/접수]-[접수확인]

〈실기 합격자 발표: lic.kotsa.or.kr〉

- 실기시험 이상유무 확인 후 시험일 18:00에 공식 결과 발표(홈페이지) (실비행의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)

〈시험접수 동의사항〉

전산장애 등 천재지변에 의한 시험진행 불가시에는 시험일정과 시간 등을 재조정하여 시험운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불을 원하시면 100% 환불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〈수험자 유의사항〉

- *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이나 학생증(주민등록등본 추가지참)을 신분증으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1. 응시표를 발급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2.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,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(휴대폰의 응시표 확인 가능)
- 3. 학과시험장 및 실기시험장에는 개인물품(책자, 휴대폰, 공학용계산기, 카메라, 가방, 전자기기 등)을 소지하고 입실할 수 없으며, 시험 진행요원 또는 시험관이 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구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.(항법계산반 등)
 - * 시험에 필요한 일반/공학용 계산기는 학과시험장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가능합니다.
- 4.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하며, 시험 진행요원으로부터 본인여부가 확인 (반드시 신분증과 응시표 제시하여야 함)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
- 5. 전산시스템에 의한 컴퓨터로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답안을 번복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6. 시험 도중에 지정된 좌석을 이탈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시험 진행요원의 안내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, 시험을 포기하면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, 다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
- 7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, 시험과 관련된 담화, 물품대여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.
- 8.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향후 2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9. 시험장에서는 시험 진행요원 또는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이의신청 절차

- 1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-4호 서식의 합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2.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 근무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.

학과/실기 시험장 위치안내

<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>

- 1. 해당실기시험에 사용될 *초경량비행장치*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.
- * 지방항공처에 영리적 목적으로 신고한 *신고증명서*와 *기체 제원표*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*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한 *안전성인증서*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(면제대상 제외)
- * 안전성인증검사 <u>유효기간이 지난 기체</u>는 실기시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* 실기시험 당일 <u>기체의 문제로 인한 책임</u>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2. 응시자격 부여받을때 제출하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*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*비행경력증명서*와 *신체검사증명서(운전면허증)*이 필요합니다.
- * 전문교육기관에서 <u>학과시험을</u> 대체하신 분은 *이수증명서*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- * 신체검사서는 *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* 또는 이에 해당되는 *신체검사증명서*를 의미합니다.
- * 실기시험 당일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체검사증명서로 인정이 불가합니다.
- * 실기시험 당일 심사위원이 서류를 검토할 때 <u>서류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</u>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능합니다.
- 3. 실기시험 당일 비행장소 및 그에 해당되는 비행계획승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.
- 4. 비행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<u>비행일자에</u> 대한 *비행승인서류* 및 해당 기체에 대한 *신고증명서*와 *제원표*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5.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는 비행경력이 있는 *동승 비행자*가 필요합니다.
- 6. 시험 결과는 실기시험 <u>당일 오후 6시 이후</u>확인할 수 있습니다.